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1. 1. 7~1. 9중 집중 폭설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폭설로 인하여 직접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직계가족에게 주민세(균등할) 과세면제.
- 나. 축사·잠사·비닐하우스시설에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재산세, 농업소득세 및 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
- 다. 농작물 및 인삼재배시설 피해자에게 농업소득세를 과세면제.
- 라. 사업장 피해를 입은 자에게 시설물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면제.

□ 검토의견

- 과세면제에 관한 법적근거로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2001년 1월중(1월 7일~1월 9일)에 내린 폭설로 인해 각종 재산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시세중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과세를 감면(면제)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폭설피해자 과세면제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세액 추계액으로는 도세(비과세) 31,839천원, 시세(감면) 26,505천원으로 총 58,344천원임.

지 방 세 법

제9조의2 (天災등으로 인한 減免)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天災·地變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地方稅의 減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議會의 議決을 얻어 地方稅를 減免할 수 있다.

풍·설 피해 복구계획

□ 기본 현황

○ 적 설 량

▷ '01.1.7~1.9 기간중 적설량 : 평균 21.5cm

▶ 최 대 : 적성 27cm 최 소 : 조리 17cm

(단위:cm)

문산	파주	법원	월릉	탄현	교하	조리	광탄	파평	적성	군내	금촌1	금촌2
25	19	21	21	20	19	17	20	22	27	26	21	21

□ 피해 상황

○ 변경 피해 복구계획 : 21,636백만원

▷ 도 합동작업일('01.1.27)에 의한 변경 피해 복구계획 금액

(단위: 백만원)

합계	지 원 복 구						자체복구
	복구액	국 고	의연금	지방비	용 자	자부담	
21,636	17,857	2,431	1	929	11,011	3,485	3,779

▷ 공공시설 91, 사유시설 21,526, 기타 19

【 공공시설 】 91백만원

○ 군부대 시설

⇒ 적성면 적암리 28연대 1575부대 신교대 영내 성당 붕괴

【 사유시설 】 21,526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시 설 명		피 해 내 역		복구계획	비고
총계					21,526	
농 업 분 야	소 계				6,502	
	비닐하우스		525동 24.61ha		2,184	
	인삼재배시설		537동 136.82ha		2,599	
	버섯재배사		19동 0.91ha		697	
	기타(표고, 육모)		174동 4.67ha		1,022	
축 산 분 야	소 계				11,227	
	축 사		496동		11,155	
	허 가	무허가	76	420		
	소규모	대규모	184	312		
	가축 폐사		57,424마리		72	
		소	15		9	
		돼지	25		2	
		닭	55,400		40	
		기타	1,984		21	사슴 1두 포함
	소 계				18	
수산 분야	수산시설		1동 0.03ha		8	
	수산생물		50,000미		10	
기타	공 장		64개 업체		3,779	

【 기 타 】 19백만원

○ 이재민 구호(6개월)	2명	778천원
○ 농작물 복구(대파대)	5.2ha	13,826천원
○ 생계지원	5세대	4,501천원
▪ 30~50미만	1세대	436천원
▪ 50~80미만	3세대	2,613천원
▪ 80%이상	1세대	1,452천원